

## < 붙임 4 > 자동차용 선팅필름 선택·사용 시 유의사항 및 관련 법령

### < 자동차용 선팅필름 선택·사용 시 유의사항 >

-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앞면·1열 유리는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.
- 앞면·1열 유리가 자외선 차단 유리인 경우, 앞 유리면은 선팅필름을 시공하지 않거나 가시광선 투과율 80% 초과인 제품을, 1열 유리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50% 초과인 제품을 선택해야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.
- 유사한 가시광선 투과율 제품인 경우, '총 태양에너지 차단율(TSER)'이 높은 제품일수록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우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해당 표시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.
- 시공 후 4일 정도 창문을 내리지 않아야 하며 후면 열선을 사용할 경우, 필름이 탈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- 내부 필름면 청소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에 비눗물이나 전용세제를 이용하여 가볍게 닦고 양면테이프·스티커·고무흡착기가 부착된 거치대 등을 부착할 시 필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한다.

### < 자동차 선팅 관련 법령 >

-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(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)
  -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\*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
  - \*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)
    - ☑ 앞면 창유리(전면 유리) : 70퍼센트 미만
    - ☑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(1열 유리) : 40퍼센트 미만
- 위반 시 제재
  - 경찰공무원은 선팅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(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).
  - 과태료의 부과 : 2만 원(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)

※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, '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(모바일 앱, [www.consumer.go.kr](http://www.consumer.go.kr))'을 통해 거래내역,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